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4. 6. 27.

행정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5월 31일

나. 발 의 자: 우경란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6월 11일

라. 상정일자: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4. 6. 2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우경란 의원)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안 제1조~제3조)
-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안 제5조~제7조)
-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강용철)

-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았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사업자의 책임감 있는 운영을 장려하고, 보조금의 투명한 집행을 제고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총 12개의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됨.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1조(목적)에서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데 설치 목적이 있음을 명시하고,
  - 안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부터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에서는 지원 표지판 종류(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에 따른 설치 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안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와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에서 지원 표지판의 설치 장소와 철거 규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0조(비용부담)와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에서 비용부담 및 관리감독 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지난 '23년 8월 행정안전부는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 방안」 발표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부적절한 보조금 지급 문제를 환기하고, 지자체의 지방보조금 집행관리 강화를 추진한 바 있으며 특히, 목적 외 사용 등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보조사업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방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를 전국적으로 독려하고 있음.
  - 이러한 기초에 발맞춰 구(區)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이나 단체에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시설물에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되고, 더 나아가 감시 및 감독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보조

사업체의 책임성 또한 제고될 것으로 사료됨. 아울러 지방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관리를 도모한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의 취지가 있다고 판단됨.

- 한편,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관리 및 철거 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법률 위임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찾을 수 있음. 또한 보조사업자의 비용 부담과 표지판 설치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공공의 이익을 비교형량 했을 때 공공목적의 이익이 더 크다고 할 수 있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도 부합된다고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 설치에 관한 조례안

(우경란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46
----------	-----

발의연월일: 2024. 5. .

발의자: 우경란, 양송이, 임현호

김지연 의원(4인)

### 1.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을 지원받는 시설이나 단체 등에 대해 구민에게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는 사실을 알리는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보조금의 투명하고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유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 제정 목적, 용어 정의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안 제1조~제3조)

나. 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다.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설치에 관한 사항

(안 제5조~제7조)

라. 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마. 표지판 등의 철거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바.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안 제10조)

사. 관리감독 및 평가에 관한 사항(안 제11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설산업기본법」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4. 4. 5.~ 4. 10.): 의견 없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보조금이 지원되었거나 지원 중인 시설 등에 구민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표지판을 설치함으로써 시설에 대한 공공활용도를 높이고 보조금의 공정한 집행과 공익에 입각한 운영과 관리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보조금”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법인격 없는 단체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교부하는 자금을 말한다.
2. “보조금지원 표지판”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보조금이 지원된 공사나 시설 또는 단체임을 알 수 있도록 문자와 기호 등을 사용하여 공사현장이나 시설의 내외에 설치한 표지판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자금이나 운영비로 사용하는 법인 또는 단체(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정한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한 날

2. 재산 처분의 제한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사업이 완료되어 10년이 경과한 날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필요한 대상 및 이를 설치하기 위한 보조금액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별도의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지원표시를 하도록 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표지판의 종류 및 내용)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하는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및 운영표지판으로 나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기관

2. 보조사업의 주요 내용

3. 그 밖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사항

제5조(공사표지판의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아 공사를 수행하는 보조사업자는 공사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거나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6조(시설표지판의 설치) ①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설을 건립한 보조사업자는 시설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시설표지판을 설치하는 대신에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시설상징물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제3조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가 원할 경우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한 시설에도 시설표지판을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운영표지판의 설치)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 등에 운영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8조(표지판의 설치 장소 등) ① 보조금지원 표지판은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거나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가 곤란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구청장과 협의하여 규격을 조정할 수 있다.

② 보조금지원 표지판 또는 시설상징물은 건물의 증축이나 개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장소를 변경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③ 운영표지판은 해마다 보조금 지원내용에 맞게 변경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규격과 형식 및 재질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표지판 등의 철거) 보조금지원 표지판 및 지원표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철거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반드시 철거해야 하고 시설물 등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4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이 정한 기간이 종료되는 날 철거해야 한다.

1.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가 취소된 경우

2. 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이 있는 경우

3.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4. 운영비에 대한 보조금 교부기간이 끝나 더 이상 운영비를 받지 않게 된 경우

제10조(비용부담) 지원표지판 등의 설치·관리 및 철거비용은 보조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1조(관리감독 및 평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감독은 해당 보조사업 담당부서에서 하며, 해마다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실태를 평가하여 다음 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때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적용례)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설치는 이 조례 시행 후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조사업자부터 적용한다.